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훈련용품 구매

과업지시서

2022. 07.



경기도체육회

GYEONGGI-DO SPORTS COUNCIL

목 차

I . 사업개요	1
II . 과업지시서	1
1. 과업개요	1
2. 과업 지시내용	2
3. 특기사항	3
4. 유의사항	3
5.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

I**사업개요**

1. 사업명 :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2. 사업개요

가. 기간 : 2022. 3. ~ 12.(연중)

나. 대상 : 경기도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다. 장소 : 경기도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라. 규모 : 25개교(초 : 6개교 / 중 : 10개교 / 고 : 9개교)

마. 주요내용

- 학교운동부에 대한 훈련용 장비 및 용품지원
- 지원내용 : 고가의 장비(과학적 훈련기기) 및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공동 훈련기구 및 용품 우선 편성

II**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훈련용품 구매

나. 과업내용 :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훈련용 장비 및 용품 구매

사업명	세목	품목	수량	비고
합 계			2,046개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일반수용비	육상 타이즈 등 45품목	1,585개	
	자산취득비	탁구대 등 131품목	461개	

다. 용도 :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선정 학교 훈련용 장비 및 용품 지원
 라.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수입물품과 같이 통관 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납품 기한이 늦어질 경우 별도 협의 가능)

마. 기초금액 : 금408,691,000원(금사억팔백육십구만일천원)(VAT포함)

2. 과업 지시내용

가. 일반사항

- 1) 본 사항은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용품 구입 입찰(계약)에 적용한다.
- 2) 본 견적(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용품 및 장비 구입 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담당자(031-250-0492)와 협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기자재 및 그 일부를 제작자의 국가, 대한민국 또는 기타 국가 내에서 보호되는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어떠한 정당한 청구도 받음이 없이 발주자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본회에서는 계약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4) 모든 제품은 정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인증서(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제품일 경우 수입인증서 등 수입사에서 발생하는 공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내용물을 원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6) 포장된 제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7) 납품품목 및 수량은 사양서의 품명 및 수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 제품으로 납품,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8) 모든 물품은 학교별 지정 장소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포장 해체하여 실질검수를 실시하도록 한다.(포장에 사용된 재료는 전부 수거해 간다.)
- 9) 장비의 설치 과정에서 물품의 훼손, 파손, 고장 등의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한다.
- 10)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유지 및 작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1) 납품 품목은 출고한 원형(각종 내용물, 설명자료 등)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 12)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른다.
- 13)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보증기간에 이상이 발생 시 무상 A/S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 요구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14)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별 지정장소로 한다.
(수입물품 - 사업부서 별도 협의 가능)

3. 특기사항

가. 검사

-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모든 물품을 학교별 지정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입회하에 물품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직접 받아야 한다.
- 2) 검사 결과 필요시 각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최적의 운용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1)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본다.
- 2) 물품 납품 시 유지에 필요한 기본 부품등을 포함하여 납품한다.
- 3) 기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준한다.
- 4) 수입품목에 대한 납품완료 시기(수입에 따른 납품지연 시)는 별도로 정하며, 사전검수는 납품확약서로 대신하며, 납품완료 시 해당서류(세관통과서 등)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본 과업지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 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자의 의견제시와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상표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5.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과업수행의 원칙

-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 하며, 과업지시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2)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3) 과업지시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자료를 제공한다.
-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